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16-207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어]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3. 10. 11.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7,500,000원

나. 과 태 료 : 3,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¹)」('이하 "舊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23.6.29.)가 접수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23.7.13. ~ 8.24.)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舊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현황

피심인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위해 '23. 8. 24.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개 인정보파일 (시스템명)	수집·이용 항목	수집일	보유건수
입학전형지원자 (입시종합정보시스템)		'14.7월~ 현재	

¹⁾ 개정된 보호법 시행(2023.9.15.)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로서 舊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을 적용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자 및 학년도 수시모집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10,255건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졸업연도, 지원학과, 출신고교, 휴대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정보파일	유출 항목	유출 규모
수시모집 서류 평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졸업(예정) 연도, 지원학과, 출신 고교, 전형 구분 등	10,183명
수시모집 평가위원	성명, 소속학과, 휴대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72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22	10.15.	, 관리자 계정 취약점 이용, 시스템 침입·개인정보 탈취		
2023	6.19.	경찰청에서 해킹 피해 사실 통보		
6.20. 총괄대응본부 구성 / 피해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총괄대응본부 구성 / 피해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6.21. 로그 및 관리자페이지 메뉴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최초 인지		로그 및 관리자페이지 메뉴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최초 인지		
	6.23.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 (문자·SNS)			
	6.29.	대표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 게재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신고		
유출정보 백업 후 데이터 삭제, 해당 웹페이지 서비스 종료		유출정보 백업 후 데이터 삭제, 해당 웹페이지 서비스 종료		
	6.30.	보안 강화한 신서버 구성, 웹서버와 DB서버 분리, 방화벽 정책 룰 적용		

3) 유출 경위

학생이 '22. 10. 15. 검색엔진(Censys)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모의평가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였고, 다양한 패스워드 조합을 시도하여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등 관리자 계정 취약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데이터를 다운로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2종류 이상 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 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마련하였으나, 비밀번호를 '1111'로 변경할 수있도록 하는 등 해당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계정 정보 또는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외부에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와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의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SHA1)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제3자가 관리자 계정에 비밀번호를 대입해보는 방식으로 해당 계정을 탈취할 수 있었고, 관리자처럼 시스템에 접속하여암호화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함으로써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함으로써

2)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3. 6. 21.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8일이 지난 6. 29.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8.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9. 7. 및 9.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시정하였으며 선처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舊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이하 '舊고시')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1111')를 설정하도록 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5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는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5조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외부에서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SHA1)으로 저장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7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舊보호법 제34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통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 등 결과를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유출 사실을 '23.6.21. 인지하고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8일이 경과한 6.29. 신고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34조제3항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舊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은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舊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 3억 5선년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일반 위반행위	1억 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나. 1차 조정

舊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舊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4점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감경한다.

< 舊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점수		점수	3점	2점	1점	
고려사항 ㅂ		비중	3 🗎	28	10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0.2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1. 접근통제 2. 접근권한의 관리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1 접근통제 2 접근권한의 관리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Ol	암호화	0.2	주민등록번호의 송신·전달·저장 시 이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안 전 성 확 보 조 치	보안 프로그램	0.2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접속기록의 보관 등	0.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물리적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 방지 후속 조치 등		0.2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보주체에게 통지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 3. 조치결과를 신고	1. 정보주체에게 통지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舊1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3이상 2.5미만	+100분의 35
2.1이상 2.3미만	+100분의 20
1.9이상 2.1미만	-
1.7이상 1.9미만	-100분의 20
1.5이상 1.7미만	-100분의 35
1.5미만	-100분의 50

다. 2차 조정

舊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舊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4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기준표>에 따라 1차 조정된 금액의 25%인 1,250만 원을 감경한다.

< 舊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점수		3점	2점	1점	
고려사항	비중	0.0	20	10	
위반기간	0.2	위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	0.2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사협조	0.2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차 피해	0.2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0.2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원교육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큰 경우*	

^{* 2020}년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 발급,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중

< 舊2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2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1이상 2.5미만	+100분의 25
1.7이상 2.1미만	-
1.3이상 1.7미만	-100분의 25
1.3미만	-100분의 50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舊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제2호),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2차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차 조정 금액을 유지한다.

마. 최종 과징금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1차·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총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과징금 산출내역 >

기준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 과징금 결정	최종 과징금
1억원	5,000만 원	3,750만 원	3,750만 원	
일반 위반행위 ※ 주민등록번호 10만 건 미만	1차 산정점수 1.4점 ⇒ 50%(5,000만 원) 감경	2차 산정점수 1.4점 ⇒ 25%(1,250만 원) 감경	해당 없음 ⇒ 감경 없음	3,750만 원

2. 과태료 부과

舊보호법 제76조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舊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 원)	
певп		1회 위반 2회 위반 3호		3회 이상 위반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舊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 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행위는 舊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舊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정)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 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는 등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舊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舊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1] - 과태료 감경기준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정보보호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경우		
노력정도	2. 8도도로 한디세계 년 8(ISINIS)를 붙는 8구		
조사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	기준금액의	
협조·	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50% 이내	
자진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기준금액의	
시정 등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 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34조제3항(신고 의무)	법 제75조제2항제9호	600		300	300

3. 처분 결과의 공표

舊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舊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4.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 5.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제5조(공표기간) 보호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경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우	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 위반	2023. 10. 11.	과태료 300만 원
2023년 10월 11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3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제75조제2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0월 11일

위원	년 장	고학수 (서명)
부위	원장	최장혁 (서명)
위	원	김일환 (서명)
위	원	김진욱 (서명)
위	원	김진환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

위 원 조소영 (서명)